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실제 회사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한결물류 윤리·준법 규정 (발췌)

시행 2026년 1월 1일 · 관리 부서 법무팀(준법 담당) · 교육용 발췌본

제1장 총칙 (요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에서 지켜야 할 윤리·준법 기준을 정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모든 임직원과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계약직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법 담당) 법무팀에 준법 담당을 두고, 신고 접수·상담·교육을 맡긴다.
제4조(교육)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도를 확인한다.

제2장 행동 기준

제5조(선물·접대)

①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1인당 시가 3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3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준법 담당에게 신고하고 돌려보낸다.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 준법 담당의 안내에 따른다.
③ 접대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경조사)

거래처 경조사에는 회사 명의 화환만 보내고, 개인 명의 경조금은 5만 원 이하로 한다.

제8조(협력사 대금)

① 협력사 운임은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을 지킨다.
② 지급일을 넘기려면 지급일 전에 협력사관리팀장의 승인을 받고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0조(고객 정보)

① 운송장과 수령인 정보는 업무용 앱으로만 촬영하고 전송한다.
② 개인 휴대폰 사진첩이나 개인 메신저에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는다.
③ 실수로 저장하거나 보낸 경우 바로 지우고 준법 담당에게 알린다.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실제 회사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제11조(영업비밀)
고객사별 운임과 계약 조건을 다른 고객사나 협력사에 알리지 않는다.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같다.

제12조(안전 점검)
운행 전 점검표는 운전자 본인이 그날 운행 전에 작성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해 두지 않는다.

제13조(이해충돌)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게 되면 거래 전에 준법 담당에게 신고한다.

제14조(신고와 보호)
① 위반을 알게 되면 준법 담당(내선 2580) 또는 익명 신고함에 알린다.
② 신고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실제 회사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제3장 위반 시 처리 (요약)

제15조(조사) 준법 담당은 신고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린다.
제16조(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인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①의 금액 기준은 매년 법무팀이 검토한다.

[붙임] 신고 방법 안내

· 준법 담당: 내선 2580 (평일 9시~18시)
· 익명 신고함: 사내 게시판 '준법 신고' 메뉴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됨)
· 선물을 받은 경우: 사진과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 주면 반송을 도와줌